

의안번호	2216193
의 퇴 인	엄태영의원
회 답 일	2026. 3. 26.
추계번호	26B0359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8,200만원(연평균 1억 1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(안 제16조의2)	45	134	134	134	134	582	116

주: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운영 시기,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2(지방위원회의 구성 등) 신설	시·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6조의2(지방위원회의 구성 등) 신설	○	•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- 다만,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는 위원 임명·위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(2026년 회의개최 횟수 1회)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현행법¹⁾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·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의 ‘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’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1) 제7조(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·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(이하 “시범운행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·도에 총 55곳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·운영되고 있음

※[참고자료] ‘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’

-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·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시·도별 ‘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(이하 “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”)’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이를 위해 시·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
- 시·도별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(민간위원 수) 개정안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·도별 각 14명으로 가정함

[표 2] 시·도별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구성(안)

(단위: 명)

구분	인원수	위원 신분
민간위원	14	자율주행 관련 민간전문가
당연직위원	6	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
합 계	20	

자료: 국토교통부

- (회의개최 횟수) 회의개최 횟수는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국토교통부는 유사사례*를 참고할 경우 시·도별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연 3회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
 - 다만, 위원 임명·위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·도별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(2026년 회의 개최 횟수 1회)
- *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: 3회(2025년 기준)

- (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)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²⁾
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(추계 결과)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둘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8,200만원 (연평균 1억 1,600만원)으로 추계됨
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(2026.7.1. 시행예정)를 반영하여 16개 시·도에서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: 2026~2030년

구 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시범 운행지구 지방 위원회	설치 시·도 수(A, 개)	16	16	16	16	16	—	—
	민간위원 수(B, 명)	14	14	14	14	14	—	—
	회의개최 횟수(C, 회)	1	3	3	3	3	—	—
	회의참석 사례금 (D, 만원/개·명·회)	20	20	20	20	20	—	—
	소계(E=A×B×C×D, 백만원)	45	134	134	134	134	582	116

주: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운영 시기,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,000원내에서 집행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2026. 1. p.150.)

IV. 부대의견

-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운영 시기, 민간위원의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]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

(국토교통부 제출자료)

연번	지자체(지구)		지구 범위	최초 지정시기
1	서울	상암	· 서울 상암동 일원(6.6Kkm ²)	‘20.12(1차)
2	서울	강남	· 강남구·서초구 일원(20.4km ²)	‘22.6(3차)
3	서울	청계천	· 종로구 청계천 일원(10.2km)	‘22.6(3차)
4	서울	청와대	· 서울 청와대·경복궁 일원(3.8km)	‘23.6(5차)
5	서울	대중교통	· 서울 합정역~청량리역, 도봉~온수 등(97km)	‘23.6(5차)
6	서울	생활권	· 동작구, 동대문구, 서대문구 일원(15.02km)	‘24.12(8차)
7	부산	오시리아	·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(5.05km)	‘22.11(4차)
8	부산	내성-중동BRT	· 부산 해운대구, 동래구 일원(10.4km)	‘25.7(10차)
9	부산	에코델타시티	·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일원(5.0km)	‘25.12(11차)
10	대구	산단-서대구역	· 국가산단-서대구역 등(19.3km ² , 40.8km)	‘20.12(1차)
11	대구	동성로	· 대구 중구 일원(4.55km)	‘23.11(6차)
12	인천	구월	· 인천시청 일원(4.24km)	‘23.11(6차)
13	인천	송도	·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(3.65km)	‘23.11(6차)
14	인천	영종	· 영종 운서역~하늘도시 일원(9.7km)	‘23.11(6차)
15	인천	국제공항	· 국제공항 일원(27.0km)	‘23.11(6차)
16	광주	평동산단	· 광산구 평동산단 등(4.4km ² , 14.2km)	‘20.12(1차)
17	울산	테크노산단	·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일원(1.8km)	‘23.11(6차)
18	울산	우정혁신도시	· 울산 우정혁신도시 일원(20.3km)	‘25.12(11차)
19	세종	상상지구	· BRT 노선(22.9km), 1~4생활권(27.12km ²)	‘20.12(1차)
20	경기	판교	· 성남시 분당구·수정구 일원(1.34km ² , 2.69km)	‘21.4(2차)
21	경기	시흥	· 배곧동, 정왕동 일원(9.5km)	‘22.6(3차)
22	경기	안양	· 안양시 일원(12.4km)	‘23.11(6차)
23	경기	수원광교	· 수원시 광교1동 일원(6.6km)	‘24.12(8차)
24	경기	화성 리빙랩	· 서부권 일원(36.13km ² +46.5km)	‘24.12(8차)
25	경기	용인동백	· 용인시 동백2동 일원(3.6km)	‘24.12(8차)
26	경기	고양	· 경기 고양시 킨텍스, 대화역 일원(28.97km)	‘25.7(10차)
27	경기	파주	· 파주 운정신도시 일원(23.3km)	‘25.12(11차)
28	경기	안산	· 안산시 초지동, 사동 일원(11km)	‘25.12(11차)
29	경기	광명	· 광명시 일원(12km)	‘25.12(11차)

연번	지자체(지구)		지구 범위	최초 지정시기
30	경기	성남	· 성남시 중원구, 성남동 일원(18.5km)	‘25.12(11차)
31	경기	양주	· 양주 옥정신도시 일원(10.4km)	‘25.12(11차)
32	강원	강릉	· 강릉시 일원(58.0km)	‘22.6(3차)
33	강원	강릉 화물운송	· 강릉시 회산동 일원(10.5km)	‘25.7(10차)
34	강원	횡성	· 강원 횡성군 둔내면 일원(25.2km)	‘25.7(10차)
35	강원	춘천	· 춘천시 일원(6.5km)	‘25.12(11차)
36	충청권	충북·세종·대전	· 충북↔세종↔대전 BRT노선(113km)	‘20.12(1차)
37	충북	혁신도시	· 충청북도 진천군·음성군 일원(6.8km)	’23.6(5차)
38	충남	내포신도시	· 내포신도시 일원(21.6km)	’23.6(5차)
39	충남	당진	· 당진 시내 일원(7.3km)	‘24.6(7차)
40	충남	천안	· 천안아산KTX역 일원(26.5km)	‘24.12(8차)
41	전북	군산	· 새만금, 고군산군도 일원(2.8㎢, 41.6km)	‘22.6(3차)
42	전북	익산	·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(10.7km)	‘22.11(4차)
43	전북	광역운송망	· 전라북도 군산시-전주시 일원(61.3km)	‘24.6(7차)
44	전남	순천	· 순천역~국가정원(9.8km)	‘22.6(3차)
45	전남	해남	· 해남군 산이로 일원(8.2km)	‘23.11(6차)
46	전남	목포	· 전남 목포시 일원(24.0km)	‘25.12(11차)
47	경북	도청신도시	·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(11.5km)	’23.6(5차)
48	경북	경주	·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(12.85km)	‘23.11(6차)
49	경남	하동	· 하동군 시가지·화개장터 일원(27.1km)	’23.6(5차)
50	경남	사천	· 사천시 일원(7.3km)	‘23.11(6차)
51	제주	시청-서귀포	· 제주시청~서귀포제1청사 등(2.23㎢, 69.8km)	‘20.12(1차)
52	제주	첨단과기단지	· 제주시 첨단로 일원(13.2km)	’23.6(5차)
53	제주	성산일출봉	· 제주 성산일출봉 일원(6.9km)	‘25.7(10차)
54	제주	제주 스마트물류	· 제주 조천읍-회천동 일원(15.7km)	‘25.7(10차)
55	고속도로(직권지정)		· 정부선 등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등(5,381.4km)	‘24.12(8차)